

## 법무매거진

# 與 박주민, 외부인사 과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추진...



### - 민변·참여연대와 법원 장악 나서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사법 최고 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위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의장(대법원장) 1명, 비(非)법관출신 위원 6명, 법관출신 위원 4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선출하는 비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법관 위원도 일선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두 추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3명은 비법관출신 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비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판사) 인사도 맡게 된다. 기존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과 민변·참여연대 등은 현행 법원행

정처가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기능해왔으며, 사법행정위 설치가 '법원 개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에 비법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 합의제 기관이다. 합의제 의결기구인 만큼 위원들 찬반 의결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은 비법관위원만 임명이 가능하게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와 고등법원 부장관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고위 법관뿐만 아니라 일선 법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경과는 지지부진했다.”며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월 3일 민변·참여연대와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명분에도 사법 행정에 외부 인사들이 관여하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법원에 대한 정치·사회 세력의 통제·개입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사법 행정의 핵심은 법관 인사다. 그런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 법관 인사 등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가 담당하게 될 경우, 대법원장에 의한 독단 못지않은 법원 외부 세력의 개입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기자회견에 친여 성향이란 평가를 받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참여한 점도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범여권 세력이 법원 내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보고 있다. 명목은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지만 결과적으로 법관 인사에 외부 세력의 영향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중국에는 법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은 단순한 재판 과정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외부 영향을 최대한 배제해야 보장된다.”며 ‘법관 인사 등 사법 행정에 외부 영향력이 커진다면 사법부 독립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또 ‘외부 인사 구성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포함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헌법학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